

제 537 호

1976. 1.24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

편집 :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

전화 75-7834

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
전화 75-6090

시 보

차 례

◎ 조 례

제 1012 호 :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환지지시 측량대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	3
제 1013 호 : 서울특별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	4

◎ 규 칙

제 1550 호 : 서울특별시 재개발사업가역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	5
--	---

◎ 훈 령

제 437 호 : 서울특별시 통장수당 지급규정	7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◎ 고 시

제 6 호 : 서울도시계획재개발지구 지정에 따른 지적고시	8
제 7 호 :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인가	8
제 8 호 :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인가	10
제 9 호 : 동청사위치변경고시	12
제 10 호 : 도시계획 (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) 결정 및 지적승인	12

<이 면 계속>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제 11 호	: 도시계획용도지역지적승인	13
제 12 호	: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(전기공급선비) 실시계획인가	13
제 13 호	: 도시계획시설 (공원) 일부변경지적승인	15
제 14 호	: 서울도시계획 (도로 , 광장) 지적승인	16

◎ 공 고

제 2 호	: 토지구획정리사업 (기간연기) 시행인가에 따른 공람	17
제 3 호	: 1976 년 하천골개채취허가예정지역공고	17
제 4 호	: 암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인가신청에 따른 공람공고	18
제 5 호	: 청산금납입고지서공시종달	18
제 6 호	: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완료공고	27
제 9 호	: 김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일부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	28
제 10 호	: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업체대체 지정공고	29
제 12 호	: 연료사용기기제조업허가취소	29
제 4 호 (중구공고)	: 동민방위협의회위원장공인신조공고	30
제 1 호 (서대문구공고)	: 동장적인개각공고	33
제 5 호 (용산구공고)	: 동민방위협의회위원장공인신조공고	33
제 37 호 (영등포구공고)	: 동민방위협의회위원장공인신조공고	36
제 23 호 (판악구공고)	: 공인의 개각공고	41

◎ 사 명	43
-------	-------	----

◎ 출석통지서	45
---------	-------	----

조 **례**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환지지시 측량대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투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 자 순 인

1976년 1월 24일

◎ 서울특별시조례제 1012 호

서울특별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환지지시측량 대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환지지시 측량대행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 조 제 1 항 단서문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"다만 공공용의 필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 5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5 조 (재정보증인의 신청) ①대행

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자는 지정 신청서 재산평가액 5 백만원 이상 소유의 재정보증이 2인 이상의 연대보증용 두한 시경보 증서를 첨부 신청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재산평가서는 재산 소재지 관할 구청장이 발행한 재산평가 조서라야 한다.

②대행업자의 지정을 받는자는 지정을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으로 일백만원 이상을 시장에게 현금으로 예치 하여야 한다.

제 5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 5 조의 2 (손해배상청구) ①대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신청자 기타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시장은 대행업자 또는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인에게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보증금으로 이에 충당할 수 있다. 손해배상의 기준과 방법은 손해 발생시 시장이 따로 결정한다. ②보증금은 허가기간의 말로 또는 취소한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.

제9조 제2호 다음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환지저지 축양필증은 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대행업자 본인의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대행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.

경할 수 있다.

제1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.

(1) 환지도서는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외부에 방치할 수 없다.

별표 1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(1) 축양사의 자격: 제1항의 축양사는 축양사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축양업무에 5년 이상의 경력을 소유하여야 한다.

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 분	수 수 로 액	비 고
1-20 필 까지	필당 3,600원	1. 1필지의 면적은 300평을 기준으로 하고
21-50 필 까지	" 1,500원	2. 300평 초과시마다 기준 수수로액의 100
50 필 초과	" 800원	분지 10에 해당하는 수수로액을 가산

부 칙
이 조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 자 준 인

1976년 1월 24일

◎ 서울특별시조례제 1013 호

서울특별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

개정한다.

제 35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35 조 (영업의 정지와 허가의 취소요구등) ①영 제 11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요구를 하고자 할 경우 법 제 147 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적발회수의 계산은 3월간을 1기간으로 한다.

②영 제 115 조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의 요구는 법 제 147 조의 2 제 1 항 각항의 각호의 사실이 1회 적발되거나 발생된 때에 행하며 영업정지의 기간은 15일간으로 한다.

③영 제 155 조의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의 취소요구는 법 제 147 조의 2 제 1 항 각호의 사실이 2회이상 적발되거나 발생된 때에 행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규 칙

서울특별시 재개발사업 가격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. 구 자 훈 인

1976년 1월 24일

◎ 서울특별시 규칙제 1550 호

서울특별시 재개발사업 가격평가위원회 운영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재개발사업 가격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2 조 (지구별위원회) 조례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개발사업 지구별 가격평가 위원회 (이하 "지구별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명 칭	관 할 구 역	비 고
소공지구 가격평가위원회	전 구 역	재개발및특정가구정비지구
외주로지구 "	"	"
남대문로 3 가지구 "	"	"
용지로 1 가지구 "	"	"
대평로 2 가지구 "	"	"
남창지구 "	"	"
장교지구 "	"	"
부교지구 "	"	"
남동지구 "	"	"
서린지구 "	"	"
적선지구 "	"	"
도련지구 "	"	"
광화문지구 "	"	"
서종로지구 "	세종로특정가구정비지구	특정 가구 정비지구
반도지구 "	반도특정가구정비지구	"
금문도지구 가격평가위원회	금문로특정가구정비지구	"
용지로 5.6 가지구 "	용지로 5.6 가 "	"
이화지구 "	이화 "	"
신문로지구 "	전 구 역	재개발지구 지정신청중
부 칙		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		

훈 령

서울특별시 통장수당지급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76년 1월 24일

서울특별시장 구 자 순 인

◎서울특별시 훈령 제 437 호

서울특별시 통장수당지급규정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통.반 설치조례 제 7 조 제 1.항에 규정된 실비 수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지급대상) ①이 규정에서 통장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통.반 설치조례 제 4 조에 규정된 통장으로서 민방위기본법 제 18 조 제 6 항에 규정된 통민방위 대장을 말한다.

②구청장이 위촉하여 임명된 통장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 3 조 (지급일) 수당지급일은 매월 15일을 원칙으로 하되 민방위의 날에 지급한다.

제 4 조 (기산) 수당은 원액으로 하되 거주지 이전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하여 통장의 직이 해촉된 경우 근무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한다. 새로이 위촉되는 경우도 또한 같다.

제 5 조 (지급방법) ①수당은 통장이 지급하며 통장이 수당지급 조사서에 날인한 후 지급한다.

②묵장은 관할 동장에게 수당지급에 사용할 인감제본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76.1.1부터 적용한다.

고 시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6 호

서울도시계획재개발지구
지정에 따른 지적고시

1. 건설부 고시 제 200 호 (75.12.16) 로 서울도시 계획 재개발 지구 (신문로 제 1. 2. 3 지구) 지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

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
건설부 고시 제 123 호 (73.4.4)
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
국 도시계획과와 관할 구청 시민
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
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6. 1. 15

서울특별시장

가. 신문로 재개발 지구 결정 조서

지 구 명	위	치	면 적 ()	비 고
신문로 제 1 지구	종로구	신문로 1 가 일부	5,200	면적은 지적도(1/600) 산정분 기준임.
신문로 제 2 지구	중구	태평로 및 신문로 1 가 일부	2,815	
신문로 제 3 지구	중구	태평로 일부	1,680	

※ 도면은 당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
보관함.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7 호

도시계획사업 (도로)
실시 계획 인 가

1. 건설부고시 제 177 호 (62.12.8) 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

사업 (도로) 에 대하여 다음과 같
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
획법 제 25 조와 동법 제 26 조 및
건설부고시 제 123 호 (73.4.4) 의
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.

2. 관계도서는 증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.

1976. 1. 19

서울특별시청 구 자 훈 ㉞

1. 사업시행의 위치 : 서울특별시중구 초동 31-3 외 7필

2. 사업외종류 및 명칭 : 명보극장앞 가차 정비공사

3. 사업규모 : 보도부력 포설 = 1.29
아스팔트포장 = 1.62

4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청

5. 착수 및 준공예정일 : 75.12.1 - 76.12.31

6.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: 별첨

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성명 : 별첨토지조서

토 지 조 서

순 위	소재지	분할전표시			분할후표시 (수용대상)			소유자	
		지번	지목	지적	지번	지목	지적	주소	성명
	중구초동	31-3			31-3	대	18.7	초동 31-3	홍용장의 1
	"	31-4			31-4	"	3.4	"	"
	"	32-1			32-1	"	10.7	초동 32-1	이은애
	"	32-2			32-2	"	1.9	"	"
	"	32-3			32-3	"	0.2	"	국
	"	33-2			33-2	"	2.3	초동 32-1	이은애
	인현동1가	102-11			102-11	도로	8.1	인현동1가 102-3	조종훈
	"	102-17			102-17	"	8.1	인현동1가 102-3	"
	계	8필					55.4		

진 물 조 서

순 위	소재지	분할전표시			분할후표시 (수용대장)			소유자	
		지번	구조	건평	지번	구조	건평	주소	성명
	초 동	31-3의1			31-3의1	목조	29	초 동 31-3	홍용강
	초 동	32-1의3			32-1의3	와중	29.8	초 동 32-1	이은애
	인현동1가	102-3			102-3	"	17.6	인현동1가102-3	조중훈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8 호

도시계획사업(도로)
실시계획인가

1. 건설부고시제 177 호(62.12.8)로
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(도
로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
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
25조와 동법제 26조 및 건설부고
시제 123 호(73.4.4)의 규정에
의하여 이를 고시함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중구청토목
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
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.

1976. 1. 19

서울특별시장 구 자 출 ①

1. 사업시행의 위치: 서울특별시중구

장교동 45번지 앞
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: 장교동
지내 가자 정비공사

3. 사업규모: 하수도투판매설(D=60)
= 108 m AS 포장= 3.27(a)

보차도경계부력= 98 m

보도부력포장= 3.82(a) 측구= 98 m

4. 사업시행자: 서울특별시장

5. 착수 및 준공예정일: 75.11.10
~ 76.12.10

6.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
소재지: 별첨

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

토지수용법제 4조 3항의 규정에

의한 관계인 주소성명: 별첨토지조서

토 지 조 서									
순 위	소재지	분할전표시			분할표시 (수용대상)			소 유 자	
		지번	지목	지적	지번	종류	지적	주 소	성 명
	장교동				45-1	대	2.7	장교동 45-6	서명숙
	"				45-13	"	24	"	"
	"				45-14	"	5.1	"	"
	"				45-15	"	33.1	후암동 41-11	안동규
	"				46-2	"	31.3	성북동 14-16	김영애외1
	"				46-3	"	7	"	"
	"				47	"	1.8	장교동 9	유정우
	"				47-1	"	2.2	"	"
	"				48-1	"	10.2	장교동 48	박영규
	"				48-2	"	7.9	삼각동 16	이영준
	"				48-4	"	8.8	삼각동 70-2	박용규
	"				48-5	"	21	화곡동 산 29-5	최상호
	"				51-2	"	5.6	장교동 51	김관일
	"				51-5	"	9.8	"	"
	"				51-7	"	5.3	마장동 564-7	조용
	"				51-8	"	7	"	"
	"				49-2	"	24	수송동 71-1	김덕운
건 물 조 서									
순 위	소재지	분할전표시			분할표시 (수용대상)			소 유 자	
		지번	지목	지적	지번	종류	면적	주 소	성 명
	장교동				47	목조외집	3	장교동 9	유정우
	"				45-5	"	44	장교동 45-6	김연찬
	"				45-2	"	20	남창동 193	안동규
	"				48	연외로외집	62	장사동 24	박장규외4
	"				49	목조스레트	11	종로구수송동 12-1	심덕운
	"				51-1	"	6.6	장교동 51	김관일
	"				51-2	"	5.6	"	"
	"				51-3	"	9.3	마장동 764-7	조용
	"				51-4	"	7	"	"
	"				45-5	목조외집	11	장교동 45-6	서명숙

○ 서울특별시고시제 9 호
 동침사 위치 변경 고시
 서울특별시 도봉구 및 천호출장소 서울특별시 강 구 자 춘 ㉠
 다 음

관할 동사무소중 다음과 같이 위치가 변경되었기 고시합니다.
 1976.1.16

구 별	동 명	위 치		이전일자
		변 경 전	변 경 후	
도 봉 구	미아제 1 동	도봉구미아동 703-48	도봉구 미아동 860-1	76.1.12
"	미아제 6 동	도봉구 미아동 688-5	도봉구미아동 645-112	76.1.12
천호출장소	천호제 2 동	강남구 천호동 425-5	강남구 천호동 457-7	76.1.8
"	거 여 동	강남구마천동 114-22	강남구 거여동 136-16	76.1.15

○ 서울특별시고시제 10 호
 도시계획 (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) 결정 및 지적승인
 1. 서울특별시도시계획 (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) 시설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, 동법 제 13 조 및 대통령령 가. 시 선 결 정 조 서

제 7753 호 (75.8.22) 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 2. 판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경기도 고양군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 1976.1.20
 서울특별시 강 구 자 춘 ㉠

시 선 명	위 치	면 적 (㎡)	비 고
일단의 공업용지	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덕은리	74,256	신 설

*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<p>㉔ 서울특별시고시제 11 호</p> <p>도시계획용도지역지적승인</p> <p>1. 건설부 고시 제 133 호 (75.8.9) 로 지정고시된 상감동 일대용도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적을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</p> <p>가.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적승인 조서</p>	<p>건설부 고시 제 123 호 (73.4.4)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</p> <p>2. 관계 도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76년 1월 21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장</p>
--	---

용도지역구분	위	치	면적 (M ²)	비고
녹지지역	나포구 상감동, 성산동, 양동, 망원동		4,179,946	
주거지역	각일부 시대문구 수색동 일부		91,100	

※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함 (도면생략)

<p>㉕ 서울특별시고시제 12 호</p> <p>서울특별시도시계획사업 (전기공급설비) 실시계획인가</p> <p>1. 서울특별시 공고 제 277 호 (75.11.19) 로 도시계획 사업</p>	<p>(전기공급설비) 시행허가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 사업 (전기공급설비) 실시 계획을 도시계획법 제 25 조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 26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123 호 (73.4.4)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</p>
---	--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영등포구 시민봉사실 및 사업시행청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전원부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- 1976년 1월 21일
- 서울특별시장
1. 사업시행지 : 영등포구 은수동 산 17의 1의 5필지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서계획 사업 (전기공급설비 실시계획인가, 내연발전소)
3. 사업의 시행면적 : 12,833㎡
4. 사업 시행자의 주소, 성명 :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5번지 한국전력주식회사 사장
5. 사업착수, 준공예정일
- 가. 착수년월일 : 1976.1.
- 나. 준공예정일 : 1976.6.30.
6.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, 지목, 지적,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(별첨)
7. 토지 또는 건물외 소유자 및 토지 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, 성명 (별첨)

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소재지및 지목지적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

토지외소유자		소유권자			소유권이외의권리자		비고	
동명	지번지목	지적	주소	성명	주소	성명		
영등포 은수동	산17-1	임	2,850	종로 신문로 2가 1-12	성해자	종로 중학동 86	박영배	가등기권자
"	산17-30	"	300	영등포 은수동 13	이영수	없음		
"	45-8	대	70	종로 신문로 2가 1-12	성해자	"	"	미등기
"	45-9	전	210	종로 신문로 2가 1-12	"	"	"	
"	45-10	대	72	"	"	"	"	
"	45-11	잡	387	"	"	"	"	

토지또는건물의소유자의토지수용법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대한권지인주소성명						
토지또는건물소재지				소유권자		비고
동명	지번	자목	지적	주소	성명	
영등포구 은수동	산17-1	입	2,860 ^평	영등포구 신문로 2가 1-12	성해자	가등기권자 박영태
"	산17-30	"	300	영등포 은수동 13	이영수	
"	45-8	대	70	영등포구 신문로 2가 1-12	성해자	미등기
"	45-9	전	210	"	"	"
"	45-10	대	72	"	"	"
"	45-11	잡	387	"	"	"

<p>◎ 서울특별시제 13 호</p> <p>도시계획시설(공원) 일부 변경지적승인</p> <p>1. 도시계획법 제 10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123 호 (73.4.4) 에 의거 서울특별시 고시 제 100 호 (75.7.4)</p> <p>가. 지적승인 일부 변경 내역</p>	<p>로 고시한바 있는 도시계획 시설(공원) 지적승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 지적승인 하겠기 이를 고시 합니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 구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 합니다.</p>
--	--

공원명	위치	면적	(평)	비고
		당초	변경	
봉천공원	관악 봉천 산164-1앞대	124,492	76,000	

1976년 1월 22일

서울특별시장

도면은 서울특별시청과 관할구청에 보관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4 호

서울도시계획(도로,광장)지적승인

1. 건설부 고시 제 8 호 (76.1.21) 에
외거 당시판내 도시계획을 다음과
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
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123 호

(73.4.4) 의 권한 위임 규정에
따라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
과의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
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
게 보이게 한다.

1976년 1월 22일

서울특별시장

가. 도로노선조서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	연 장	기 점	종 점	비 고
기정	대로	3	12	25	2,010	이태원	서빙고동	
변경	광로		36	40	350	서빙고동 1-1	서빙고동 153-1	
변경	대로	1	37	35	1,660	이태원동 455	서빙고동 1-1	
신설	대로	3	111	25	1,150	서빙고동(대 3-26)	반포동(중 1-136)	교 량
기정	중로	1	39	20	1,430	용산동 2가	이태원동	
변경	중로	1	39	20	430	용산동 2가 262	용산동 2가 8	
변경	대로	1	36	35	1,000	용산동 2가 8	이태원동 455	
기정	중로	2	48	15	410	회현동 2가	회현동 1가남산밑	
변경	대로	1	35	35	550	회현동 2가 78-2	회현동 1가남산밑	위치일부 변경

나. 광장조서

구분	번호	광 장 명	위 치	면 적	비 고
신설	60	회현2가광장	중구 회현동 2가 78-2 일대	6,360 제	
신설	61	를트동상광장	용산동 2가 7 일대	16,870	

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2 호

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 (기간연기)
시행인가에 따른 공람

1. 망우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의
7개지구에 대한 사업변경 인가

다 음

(건설부공고 제 2호 : 76.1.5) 내용을
다음과 같이 공람합니다.

2. 관계도서는 당시 도시계획국 도
시경비과, 구획정리과 및 관할구청
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
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1976년 1월 15일

서울특별시 장

변경사항 (사업기간 연기)

지 구 명	사 업 시 행 기 간	
	당 초	연 경
망우지구	67.1.21 - 75.12.31	67.1.21 - 77.12.31
김포지구	68.1.23 - /	68.1.23 - /
시흥지구	68.1.23 - /	68.1.23 - /
신림지구	70.9. 3 - /	70.9. 3 - /
화양추가	72.3.28 - /	72.3.28 - /
신림추가	72.11.6 - /	72.11. 6 - /
영동추가	71.12.28 - /	71.12.28 - /
천호지구	72.11.6 - /	72.11.6 - /

1976년 1월 15일

서울특별시 장

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3 호

1976년 하천 골재채취
허가 예정지역공고

서울특별시 1976년도 하천골재채취허가
예정지역을 다음과 같이 공포
합니다.

1. 하천명 : 한강 (서울특별시 관내)
2. 지역면적 : 7개지역 1,390,000평
3. 지역별 위치도 : 별지도면과
같음.
4. 위치도 열람 : 관할구청 및 출장소

◎ 서울특별시공고 제 4 호

암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
인가신청에따른공람공고

건설부공고 제 57 호 (75.5.9) 에
외거 서울특별시 공고 제 130 호
(75.6.5) 로 공람하였던, 암사토지
구획정리사업 계획에 대하여 본지
구내 기본 가로계획및 아동 공원
등 일부 사업 계획이 변경 되었
기 토지 구획정리사업법 제 34 조
규정에 따라 14 일간 토지 소유자
및 이해 관계인에게 공람에 공합
니다.

1976년 1월 일

서울특별시장

다 음

1. 사업명칭 : 암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
2. 사업지위치 : 강남구 암사동및 천호동 각 일부
3. 사업변경내용
가. 도시계획시설변경 (도로)

나. 공원 (아동공원) 변경

4. 관계도서는 서울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개별 통지는 본 공고로 가름 합니다.

인

◎ 서울특별시공고 제 5 호

청산금납입고지서공시송달

청산금 납입 고지서를 각 납입 의무자에게 발송한바 있으나 수령인의 주소 또는 거소 불명으로 직접 송달이 되지 않아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68 조 제 3 항. 및 지방세법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1976년 1월 24일

서울특별시장

1. 주소또는거소성명 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방우동 209-10
왕지환 외 206 건
별첨조서참조
2. 구분 : 청산금 75년도 수기분
가. 납부장소 : 당시도시계획국도시행정과
나. 납부기간 : 76.2.

수납 번호	물 전 지			과 도 명	청산금 채납액	남 부 자		비고
	동	지 번	평수			주 소	성 명	
37	망우	146-78	65.1	4.9	109,240	망우 209-10	왕지항	
38	"	146-31	69.2	6.4	142,581	"	"	
61	"	127-29	21.1	0.1	2,466	동작동 307	진상호	
84	"	134-1	48.6	24.2	794,147	망우 173-3	김광익	
113	면목	54-1	609.4	13.5	408,442	면목 634-5	황천희	
123	"	53-2	54.4	1.2	36,306			
124	"	53-3 52-2	349.9	0.3	9,076			
141	"	14-26	37	0.4	14,025	영륜동 1가 3	최근육	의1인
146	"	14-33	41.6	1.4	42,918			
151	"	5-15	49.3	2	68,156	중곡동 62-39	임국재	
152	"	5-13	17.3	1.1	31,643	동작동 307	조병권	
155	"	5-2	57.7	8.6	253,691			
158	"	5-21	39.8	4.7	137,556	망우동 529	김길용	
170	"	1-5	118.8	7.3	215,415			
179	"	1-8	31.2	2.3	69,012			
180	"	1-7	35.1	2.9	87,012			
181	"	1-11	34	2.6	71,718			
182	"	1-10	30.8	2.3	69,012			
183	"	1-9	12.3	0.8	22,015			
186	"	1-21	32.3	0.9	24,846	면목 13-10	박해순	
194	"	3-3	831.3	1.7	51,771	아현동 617-33	서경재	

수납 번호	물 건 지			과 도 평	청산금 채납액	납 부 자		비고
	동	지 번	평수			주 소	성 명	
217	망우	437-26	55.5	2.7	100,739	면목 산 54	김현환	
228	"	436-8	57.3	2.5	93,277	계기동 120-201	김성향	
233	"	436-2	38.1	3.1	99,141			
238	"	426-4	137.1	20.1	598,839	청량리동 176	이 성	
289	"	420-7	36.6	0.4	11,908	망우 463-6	김형재	
306	"	423-2	37.7	19.3	656,817	망우 452-2	김경현	
307	"	423-8	141.8	16.5	501,699	홍제동 산 1번지	이정용	
311	"	422-9	73.6	0.8	23,897	망우 303	김재근	
319	"	421-33	43.7	1	37,962	망우 459-27	한국남	
327	"	421-16	52	1.3	42,178	망우 453-48	김창호	
357	"	406-6	37.8	1.5	48,808	홍성군 홍성읍오관리 4	윤국희	
371	"	405-20	34.4	1.9	60,963	망우 448-63	이건복	
382	"	182-25	12.7	0.7	19,324	망우 417-2	민월식	외 2인
397	"	152-29	34	1.3	39,334	망우 130-5	김영수	
404	"	152-9	34.5	1.3	34,422	종로 1가 42	주연순	
415	"	152-1 151-2	710.3	5.2	154,367	면목 993-14	임인수	
421	"	151-31	37.6	0.4	12,052	대흥동 2-77	이윤숙	
430	"	149-23	70.2	1.2	34,992	망우 146-4	이병욱	
433	"	133-17	62	2	49,764	망우 163	김규천	
436	"	133-15	185.9	5.3	166,197	망우동 163	김규천	외 1인
150	"	5 - 23	38.5	3.2	662,401 93,641	동작 301	조병권	
33	쌍문동	103-153	162.8	10.5	68,155	미아동 754-153	박순준	

수납 번호	물진지			과도 평	청산금 채납액	납부자		비고
	동	지번	평수			주소	성명	
47	창동	641-1	400	8.4	19,600			
49	쌍문동	399-49	296.2	12.6	629,622	미아동 산5	김막동	
60	"	103-92	42.6	2.4	63,700	수유동 181-58	서우순	
70	창동	산103-65	186.5	2.2	119,301			
114	쌍문동	123-38 37	42.7	8.5	224,850	쌍문동 123-37	윤상노	
138	"	100-5 -6	94.5	4.2	26,355	쌍문동 98-3	전갑순	
161	"	98-25	40.6	3.1	94,974	쌍문동 95-28	서태원	
177	"	98-70 15	29.8	1.6	8,480	방원동 57-220	임원승	
182	창동	96-24	161.5	11.5	554,628			
185	쌍문동	96-27	135.7	5.7	266,657			
191	"	96-9	355.5	0.3	2,316	창동 664-3	이제신	
192	"	96-14	37	1.4	8,834	쌍문동 95-20	정낙진	
210	"	88-42	70.8	1	8,542	쌍문동 95	채국병	과1명
220	"	88-25	49.2	0.5	18,130	미아동 239-18	정연중	
221	"	88-84	50.6	0.8	18,130	미아동 237-11	김택선	
249	"	94-28	39.1	0.3	2,371	창신동 390-2	오종환	
250	"	94-30	195	1	31,671	삼선동 3가 34	권인원	
259	"	120-5	27.4	5.4	140,518			
267	"	122-45	38.4	2.5	65,675	종암동 79-54	최돈화	
274	"	122-59	41.4	1.4	36,778	쌍문동 122-2	김순자	
280	"	122-65	64.3	3.1	81,437	종암동 55-23	최창호	
303	"	122-6 -7	36	0.5	14,301	쌍문동 125-10	정해수	과1명
307	"	122-17	36.6	0.6	15,775	이태원동 44-20	김복수	

수납 번호	물 건 지			과 도 평	청산금 채납액	남 부 자		비 고
	동	지 번	평수			주 소	성 명	
309	쌍문동	122-19	52.5	0.6	15,775	번동 424-41	김재제	외2명
321	"	122-96	19.9	0.4	10,517	신당동 236-33	이병무	
323	"	122-98	45	0.5	14,110	쌍문동 315-43	노상중	
330	"	85-20	31.5	1.5	36,460	인천시 금곡동 45	강영선	
332	"	85-25	30	3	79,866	미아동 38-21	박순량	
349	"	143-12	42.6	4.1	112,016	미아동 267-4	김봉래	
355	"	143-22	64	3.4	95,985	번동 471-51	이항택	
375	"	141-3 -4	30.6 46.6	3	87,006	쌍문동 141	정술자	
378	"	141-41	35.7	1	27,994	미아동 791-474	유창균	
404	"	80-9	20.9	0.3	8,107	쌍문동 88-9	송병진	
419	"	88-61	49.6	6.6	170,345	미아동 215-6	김형준	
446	창 동	662-5	174.6	3.8	137,704			
440	"	661-3 -51	58.8	1.1	55,763	면목동 20-33	이예배	외3명
452	"	661-59 -60	50.5	0.8	39,921	삼왕십리 77-54	김덕주	
455	"	661-6	434.5	8.8	312,813			
456	"	661-7	171.4	0.5	13,106	미아동 460-26	전사규	외1명
470	"	661-41	43.9	0.4	20,175	외정부시외정부동117	윤진현	외3명
482	"	661-46	43.7	0.2	10,087	창동 373	한광동	
483	"	661-47	43.7	0.2	10,087	창동 373	한광동	
487	"	661-71	83.3	0.1	2,700			
493	"	659-5	107.3	1.6	82,337	미아동 488-42	정영희	외2명
508	"	655-11	101.8	0.6	30,303			
509	"	655-23	132.1	1.3	82,071			

수납 번호	물 건 자			과도평	청산금 채납자	납 부 자		비고
	동	지 번	평수			주 소	성 명	
510	창 동	655-24	70.9	0.2	7,000			
515	"	650-15,16	33.7	0.6	11,052	창동산 67-21	김 종 선	
518	"	650-27	33.2	0.1	2,341	창동산 67-12	라 익 규	
529	"	650-42	28.8	0.4	11,382	창동 649-4	방 극 열	
542	"	623-60	38.1	1.1	25,622	미아동 839-397	박 봉 근	
581	"	621-50	100.7	0.7	15,343	상계동 1117	장 옥 전	
613	"	651-45	32	0.1	2,493	빙천동 126-2	서 상 우	
630	"	657-62,78	57.1	0.1	2,532	창신동 664-3	이 제 신	
636	"	657-69	26.6	0.6	16,132	창신동 664-3	이 제 신	
668	"	657-40	29.1	0.2	3,368	미아동 448-42	정 영 희	
679	"	657-108	36.9	1.3	31,953	파주군천현면법원리 420	진 영 두	
721	"	658-14	31	0.9	21,120	하월곡동 81-408	이 한 구	
730	"	663-7	50.8	2.3	70,046	창 동 52-2	서 주 벽	
749	"	663-31	27.4	0.4	10,650	정농동 645-16	김 삼 기	
753	"	663-37	102.6	5.9	205,774			
772	"	662-19	107	0.3	1,464	광희동 2가 134-1	박 형 순	
777	"	664-33	39.4	0.4	13,056	창동 665-10	김 수 경	
778	"	664-4	57.3	3.7	132,648	광희동 278-2	심 제 후	
790	"	667-45	24	4.3	115,042	쌍문동 299	문 예 용	
793	"	667-52,57	32.7	0.2	5,040	창 동 667-9	유 길 준	
801	"	667-31	31	1	21,203	원남동 128	황 덕 주	
830	"	676-4,72,75	247	2.6	81,568	창 동 107	임 독 용	약 1명
858	"	676-55	17.2	0.2	5,245	돈암동 8-47	박 광 훈	

수납 번호	물 전 지			과도평 면적	침산금 세납액	납 부 자		비고
	동	지 번	평수			주 소	성 명	
860	창 동	676 - 59	24.2	1.6	41,960	마아동 138-9	은규덕	
863	"	676 - 65	16.4	0.7	17,825	쌍문동 141	이석원	
870	"	674 - 5,94	30.4	2.2	52,346	창 동 674-4	박재택	
876	"	674 - 45	27.4	0.4	11,527	창동 산 107-33	윤성영	
891	"	674 - 66	31.2	0.6	19,977	수유동 산 155	유기준	
903	"	674 - 110	62.5	0.7	29,409	수유동 248-14	이석원	
908	"	667 - 73	26.6	0.6	9,030	예관동 128-2	이영순	
911	"	683 - 17	39.8	64.6	70,872	중학동 82	이월금	
917	"	683 - 1	30.3	0.3	1,065			
923	"	674 - 76,99	13.8 16.2	3	12,540	창동 산 103	민기영	외1명
926	"	674 - 115	47.7	2.7	37,683	전농동 554	조의남	
929	"	674 - 127	45	1.8	29,912	창동 674-127	김철곤	
930	"	674 - 126	44	2.8	46,530	창동 674-126	민병천	
932	"	674 - 124	41.2	2	18,279	창동 674-124	이기현	
969	"	608 - 28	32.8	1.2	28,945	창동 산 107-82	박효신	
1014	"	623 - 18	34.5	2.5	91,952	창동 617-7	최용용	
1016	"	623 - 20	31.7	2.2	51,436	이태원동 255-40	김효중	
1039	"	629 - 7	131	0.9	21,145	창동 627-4	윤부선	
1044	"	628 - 3	36.9	0.1	2,306	하월곡동 81-259	권병욱	
1045	"	628 - 4	36.1	1.1	25,888	정농동 254-236	최동근	
1046	"	593 - 6	34.7	3.1	12,750	창 동 614-3	박상열	
1082	"	609 - 138	33.1	1.2	27,588	창 동 산 114-10	정태만	
1116	"	607 - 22	33.8	1.6	44,129	창 동 135	민명조	

수납 번호	물 건 지			과도평	청산금 해납액	납 부 자		비 고
	동	지 번	평 수			주 소	성 명	
1116	창 동	607 - 31	84.3	6.7	191,425	신공덕동 13-11	이 이	
1118	"	607 - 43	75.5	2.4	57,792	제거동 955	이 주 호	
1129	"	596 - 21	388.1	37.1	113,971	창 동 393-6	김 상 임	
1150	"	635 - 1	326.5	6	22,414	창 동 634 - 2	신양제지 공업 Co	
1178	"	632 - 46	258.9	0.8	19,608	수유동 605	아 일 린 식 이 인 준	
1179	"	632 - 49.50	401.1 649.8	6.2	24,328	명륜동 2 가 57-2	남 병 석	
1187	"	632 - 7	41.4	4.7	16,412	양주군구리면교문리	박 영 옥	
1217	"	582 - 10	29.7	0.4	9,612	창 동 584-10	임 영 재	
1230	"	585 - 125	38	1.5	45,123			
1234	"	585 - 146	192.9	1.3	30,290	창 동 590-3	박 자 순	외 1명
1237	"	585 - 66	38.1	0.7	17,969	창 동 556-45	김 체 영	
1252	"	585 - 107	189.1	8.3	34,038	동선동 1 가 101	김 승 근	
1264	"	585 - 99	305	0.3	1,318	창 동 556-82	권 혁 선	
1265	"	585 - 100	39.8	0.8	3,314	창 동 556-85	라 원 산	
1271	"	585 - 112	34	2	39,070	충무로 1 가 15-14	이 경 순	
1276	"	585 - 117	41.9	1.4	47,038	번 능 415	안 정 숙	
1278	"	585 - 120	46.2	1.6	51,379	창 동 556-102	경 우 권	
1280	"	585 - 118	42.1	0.1	3,054	창 동 556-230	박 단 영	
1282	"	585 - 140	38.8	0.7	17,628	중계 동 426	라 성 용	
1306	"	582 - 46	90.4	5.7	136,150	아태원동 2 - 3	이 양 준	
1328	"	601 - 96	55.1	1.2	29,156	동선동 2 가 194	곽 옥 선	
1335	"	601 - 81	76.8	0.4	10,076	동선동 5 가 127	김 울 오	
1336	"	603 - 46	60.4	4.1	116,572	창 동 산 119-58	전 국 건	

수납 번호	물 전 지			과도형	청산금 채납자	남 부 자		비고
	동	지 번	평수			주 소	성 명	
1350	창 동	603 - 69	72.6	0.6	14,733	창 동 305-48	이 태 승	
1368	"	603 - 41	29.5	1.7	42,534	청량리동 119	김 기 끈	
1376	"	603 - 9	15.2	4.8	26,985	견지동 19	윤 성 구	
1382	"	442 - 11	47.1	4.6	93,292	창 동 411-17	장 정 계	
1389	"	442 - 30	36.4	1	27,419	화곡동 409-25	김 용 학	
1398	"	568 - 3	78.9	0.9	29,503			
1400	"	568-21.2.24	109.9 144.9	42.7	1,223,739	정능동 192-274	이 결	
1402	"	601 - 1	73.5 35.5	0.1	3,957	성산동 267-4	홍 순 석	
1410	"	601 - 16	28.6	1.5	46,056	번 동 391-19	임 명 순	
1434	"	601 - 51	69.3	8.3	248,070	창 동 산 119-28	정 복 임	
1437	"	601 - 59	37.2	3.2	88,393	창 동 602 - 3	이 우 근	
1449	"	601 - 83	71.7	0.3	7,945	계기동 1140-16	이 민 자	
1453	"	581 - 29	59.9	3.2	12,217	안암동 1가 274	선 여 옥	
1459	"	581 - 9	38.7	0.6	2,322	창 동 575-29	안 병 근	
1462	"	581 - 13	58.2	2	7,742	창 동 575-25	정 병 계	외 1인
1463	"	581 - 15	31.1	0.3	2,709	수유동 178-12	박 종 자	
1474	"	581 - 2	197.8	0.4	14,210	용두동 102-31	백 상 승	외 1인
1476	"	569 - 1	31.2	0.2	8,137	창 동 569-1	송 재 호	
1477	"	569 - 2	31.2	0.2	7,065	이문동 137-6	서 재 덕	
1483	"	569 - 17	17.4	0.1	358	계기동 148-71	태 주 성	
1492	"	569 - 48	23.8	2.3	6,254	창 동 556-196	서 석 만	
1495	"	569 - 55	20.8	5.2	18,662	계기동 148-71	태 주 성	
1515	"	554 - 2	88	17.4	457,028			

수납 번호	물 건 지			과도명	청산금 해납액	납 부 자		비 고
	동	지 번	평 수			주 소	성 명	
1523	창 동	557 - 2	35.7	0.7	17,427	수유동 518-54	윤정일	
1548	"	557 - 16	53	0.9	20,077	수유동 2-100	황동춘	
1567	"	557 - 64	90.3	3.7	20,650	이촌동 301	이성희	외1인
1577	"	557 - 73	42.6	1.6	20,900	동서문동 3가 2	유정식	외5인
1664	"	553 - 42	39.9	0.3	7,413	창 동 556-296	단광준	
1100	"	442 - 2	57.90	6.1	13,199	용산 2가 7-809	윤혜숙	
1036	"	629 - 1	355.50	2.4	1,146	수유동 678-3	이상희	
438	"	662 - 1	127.3	4.9	12,673	창동 662-1	이 호	
763	"	664 - 30	43.9	1.7	12,645	안락동 2가 95	이익남	
232	쌍 문	94 - 5	35.70	0.4	13,092	쌍문농산 146-2	유종수	
231	"	94 - 4	35.70	0.4	13,092	" 146-12	서울시경	

○ 서울특별시 공고제 6 호

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완료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제 49 호 (73.4.11)로 실시계획 인가된바 있는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(반포아파트단지)이 공사완료 되었다기 도시계획법제 85조 제 1항 및 동법제 46조제 2항, 제 3항의 규정과 건설부

- 고시제 123 호 (73.4.4)의 권한위임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악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6. 1. 23

서울특별시장

- 1. 사업시행지: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작동 307 번지의 3 필지
- 2. 사업명: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 (반포아파트 조성사업)
- 3. 준공면적: 110,820 평 (인가면적 153,539 평중 잔여면적은 공유수면 매립 준공분임)
- 4. 사업시행자: 대한주택공사
사 장 양 택 식
- 5. 사업기간: 착공 73. 4. 20
준공 75. 9. 30
- 6. 준공도면: 별첨 인증도면 (생략)

- 1. 당시가 시행하는 김포토지구 획정리지구에 대한 사업계획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 33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로 부터 14일간 공람공고 합니다.
- 2. 사업계획 변경인가에 따른 관계서류는: 당시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별도 제별통지할것이나 통지불 받게 못할 때에는 이 공고로서 갈음한다.

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9 호

김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일부변경
인가신청에 따른공람공고

1976. 1. 24

서울특별시 장

사업계획 변경 조서

지구명	위 치	면 적	변 경 내 용				비 고
			변 경 전		변 경 후		
			용 도	면 적	용 도	면 적	
김포지구	203 구 획 (화곡동 1-1 3-1, 4-1)	15,407평	저수지	15,407평	일 반 지	10,772.60	
				공용외정사	3,000		
				도 로	1,634.40		
제		15,407평		15,407평		15,407평	

첨부: 관계도면 (생략: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도시정비과보관) 끝.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10 호
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
 지정업체대체지정공고

당시에서 지정한 수출품 생산 지
 정업체중 상호 및 소재지가 변경된

다 음

다음 업체를 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
 업체 지정 및 자금지원 요령 제 7
 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 지정
 공고한다.

1976. 1.
 서울특별시장

원 지정					대체 지정				
지점 번호	회사명	대표자	소재지	수출품	지점 번호	회사명	대표자	소재지	수출품
4001	한일카드 산업 (주)	송계성	성동구 성수동 2가 225	편지 카드	4001	한일공업 (주)	송계성	성동구 성수동 2가 225-1	편지 카드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12 호
 연료사용기기제조업허가취소

연관리법 제 10 조제 3 항의 규정에
 의거 연료사용기기제조업허가를 다음

다 음

과 같이 취소하고 동년시행령 제 4
 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
 공고한다.

1976. 1. 27
 서울특별시장

허가 번호	업체명	소재지	대표	허가종류	위반내용	적용법조
19	대성내화 물산	강남구 명일동 84	오인순	구입만용 화덕	형식승인을 받 지 않고 승인 에 관한 육사 표시로 제조 판매	연관리법 제 11 조 제 1 항 및 동제 13 조제 3 항위반 동제 10 조제 3 항 적용

○ 중구 공요제 4 호

동민방위협의회위원장공인신조공고

민방위기본법 제 6 조 제 2 항의 규정
에 의하여 설치된 동민방위협의회
위원장 공인을 신조하였기 다음과
같이 공고함.

1976. 1. 15.

서울특별시중구청장 양재범

다 음

1. 공인의 명칭 (민방위협의회위원장
의 인 (적인)) 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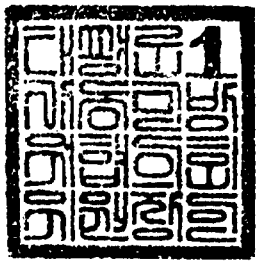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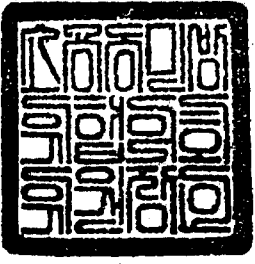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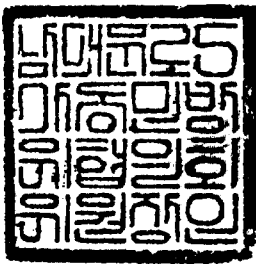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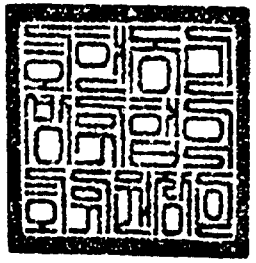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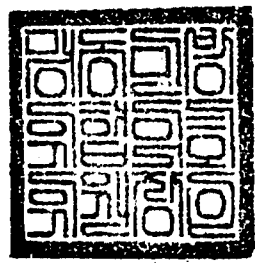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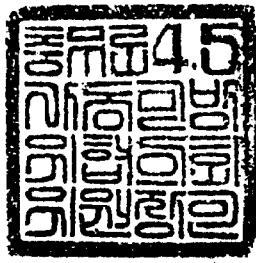
대평로 1 가동, 소공동, 남대문로 5 가
동, 회현동, 명동, 중부로 4 · 5 가동
필동, 강충동, 광희동, 을지로 4 · 5
가동, 을지로 3 가동, 신당계 1 동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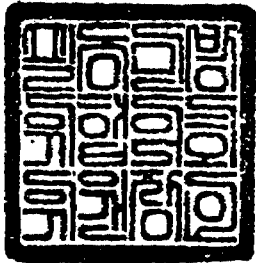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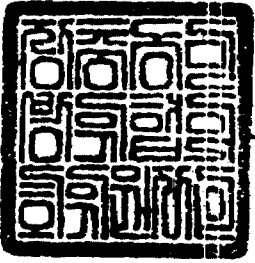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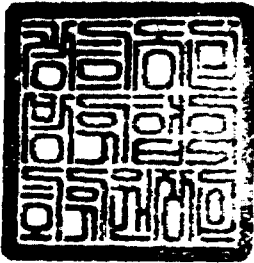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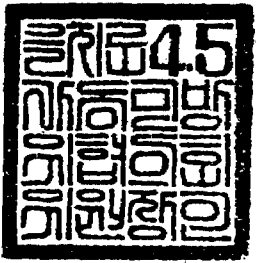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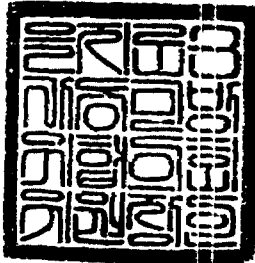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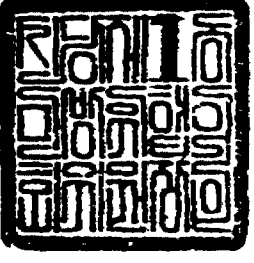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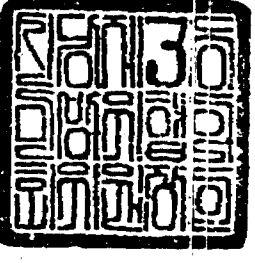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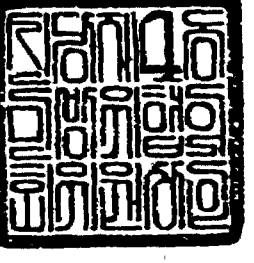
신당계 2 동, 신당계 3 동, 신당계 4 동
신당계 5 동, 신당계 6 동, 신당계 7 동
신당계 8 동, 서소문동, 추림동, 만리동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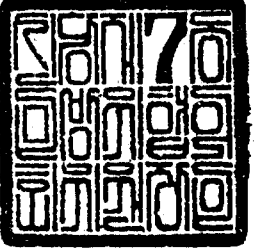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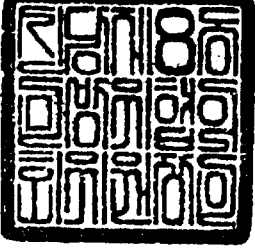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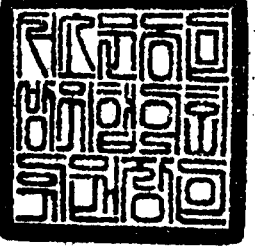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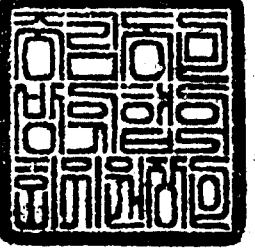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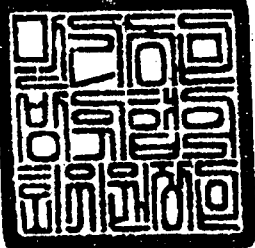
2. 사용개시년월일 : 1976. 1. 20. 09:00

3. 공인의 인영

(민방위협의회위원장인)

대 평 로 1 가 동	소 공 동	남 대 문 로 5 가 동
		
회 현 동	명 동	중 부 로 4 · 5 가 동
		

관 동	장 중 동	장 최 동
		
울지로 4·5 가동	울지로 3 가동	신 당 1 동
		
신 당 2 동	신 당 3 동	신 당 4 동
		

신 당 5 동	신 당 6 동	신 당 7 동
		
신 당 8 동	서 소 분 동	승 립 동
		
만 리 동		
		

○ 서대문구공고제 1 호

동장직인 개각공고

당 구산하 흥은제 4 동장의 직인을
1976년 1월 12일 17:00분경 분실
하였으므로 아랫 인영과 같이 개각
1976년 1월 13일 09:30부터 사용계
되었기 서울특별시 동인 규칙 제 6
조에 의거 공고함.

1976. 1. 13

서대문구청장

< 흥은 4 동장 인영 >

분실되어 폐기된 인영



새로 개각 사용계 되는 인영



○ 용산구공고제 5 호

동민상위협의회의위원장공인신조공고

인방위 기본법 제 6 조 제 2 항의

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동민상위협의
회의위원장 공인을 신조하였기 다음과
같이 공고함.

1976. 1. 21

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박승환

다 음

1. 공인의 명칭 (민방위협의회의위원
장 인 (직인))

- 후암동, 용산 2 가제 1 동, 용산 2 가
제 2 동, 남영동, 철파제 1 동, 철파
제 2 동, 원효로제 1 동, 원효로제 2 동,
효창동, 용문동, 한강로제 1 동, 한강
로제 2 동, 한강로제 3 동, 아흔제 1 동,
이촌제 2 동, 이태원제 1 동, 이태원
제 2 동, 한남제 1 동, 한남제 2 동,
서빙고동, 보광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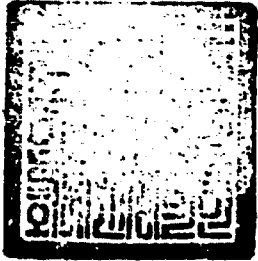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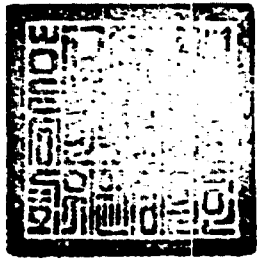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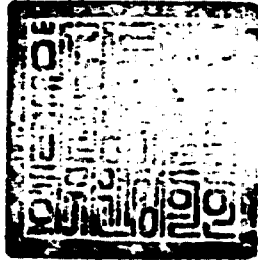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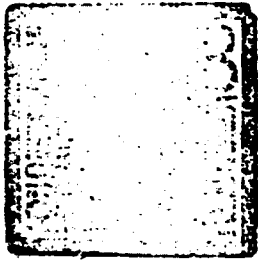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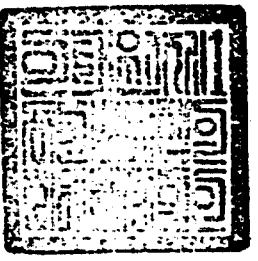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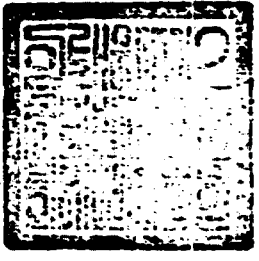

2. 사용계서년월일: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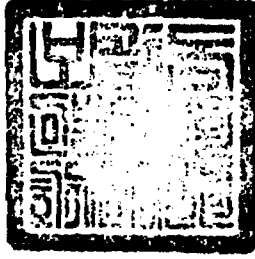
1976. 2. 1. 09:30

3. 공인의 인명

(민방위협의회위원장의 인)

후 앞 등	용산 2가제 1 등	용산 2가제 2 등
남 옆 등	청파계 1 등	청파계 2 등
원호로계 1 등	원호로계 2 등	효창 등

용 문 동	한강로제 1 동	한강로제 2 동
		
한강로제 3 동	이촌계 1 동	이촌계 2 동
		
이대원계 1 동	이대원계 2 동	단남계 1 동
		

한 남 제 2 동	서 병 교 동	보 광 동
		

◎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고제 37호

동인방위협의회위원장공인신조공고
 인방위 기본법 제 6 조제 2 항의 규정
 에 의거 선출된 동인방위협의회위원장
 공인(직인)을 신조하였기 다음과
 같이 공고한다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한 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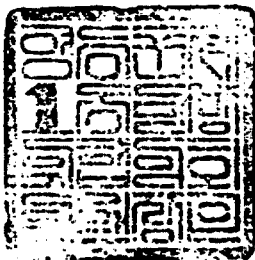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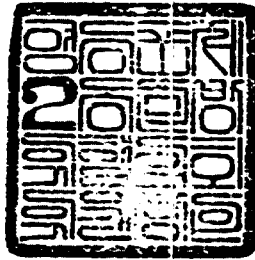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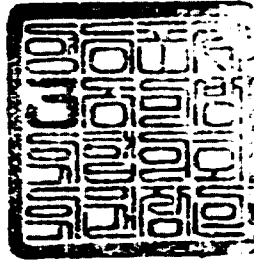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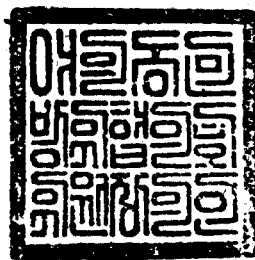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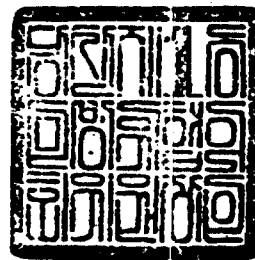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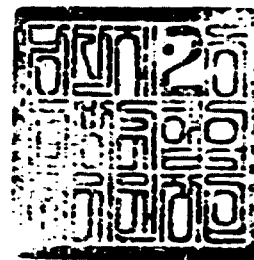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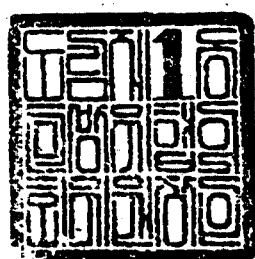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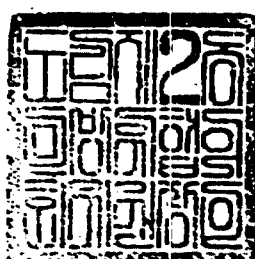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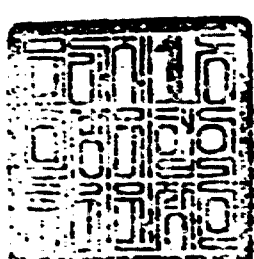
다 음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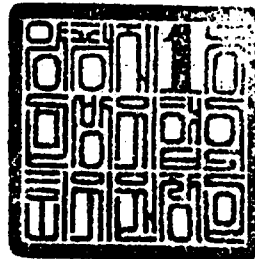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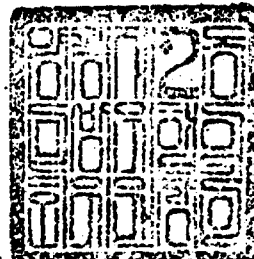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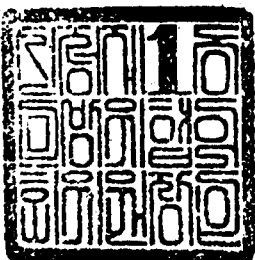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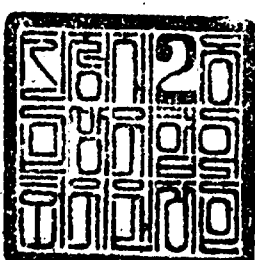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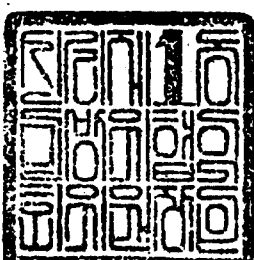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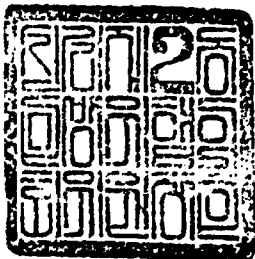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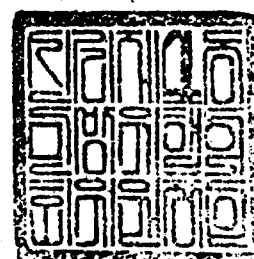
1. 공인명칭 : 영등포제 1 동, 영등포
 제 2 동, 영등포제 3 동, 여의도동,
 당산제 1 동, 당산제 2 동, 도림제 1 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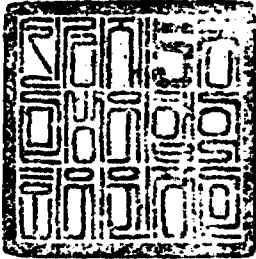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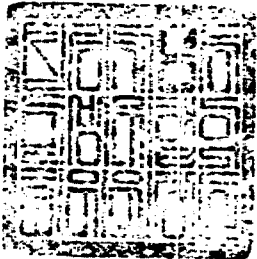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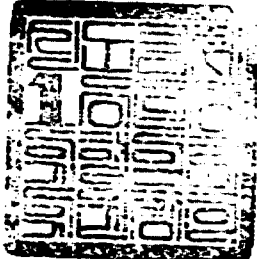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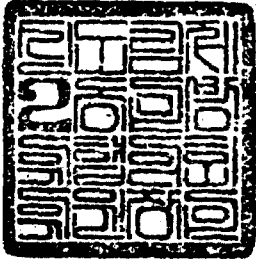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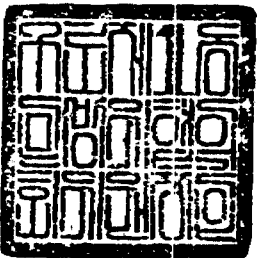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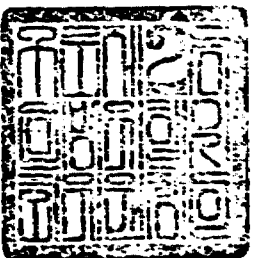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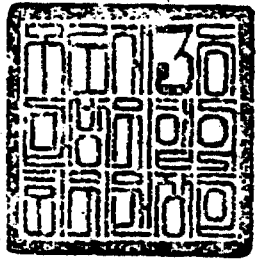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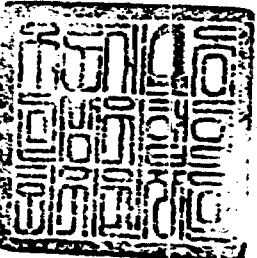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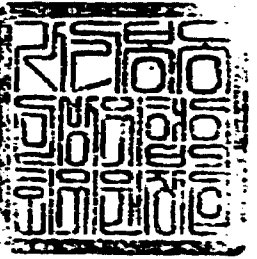
- 도림제 2 동, 문래제 1 동, 문래제 2
 동, 양명제 1 동, 양명제 2 동, 신정
 제 1 동, 신정제 2 동, 신길제 1 동,
 신길제 2 동, 신길제 3 동, 신길제 4
 동, 신길제 5 동, 신길제 6 동, 신도
 립제 1 동, 신도림제 2 동, 구로제 1
 동, 구로제 2 동, 구로제 3 동, 구로
 제 4 동, 가리봉동, 독산동, 시흥제
 1 동, 시흥제 3 동, 고척동, 개봉동
 오류제 1 동, 오류제 2 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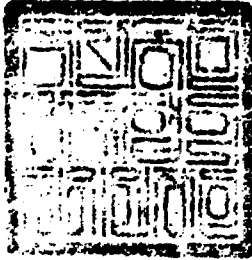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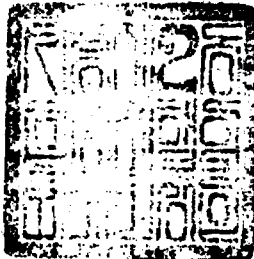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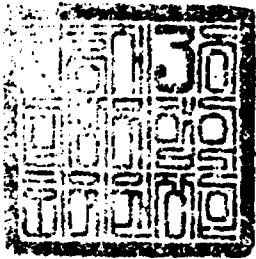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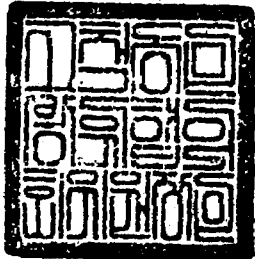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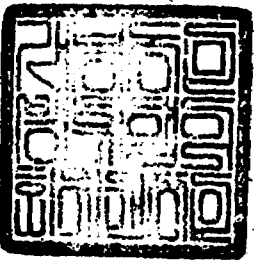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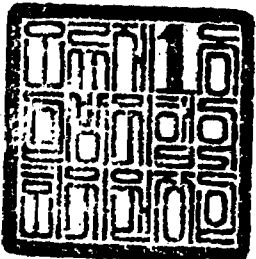

2. 사용개시 : 1976년 1월 20일
 9시.









3. 동민방위협의회위원장인 인영












영 동 포 제 1 동	영 동 포 제 2 동	영 동 포 제 3 동
		
이 의 도 동	당 산 제 1 동	당 산 제 2 동
		
도 립 제 1 동	도 립 제 2 동	문 회 제 1 동
		

문 제 계 2 동	양 명 계 1 동	양 명 계 2 동
		
신 정 계 1 동	신 정 계 2 동	신 길 계 1 동
		
신 길 계 2 동	신 길 계 3 동	신 길 계 4 동
		

신진계 5 동	신진계 6 동	신도림계 1 동
		
신도림계 2 동	구로계 1 동	구로계 2 동
		
구로계 3 동	구로계 4 동	가리봉동
		

<p>특 산 품</p>	<p>시 용 계 1 품</p>	<p>시 용 계 2 품</p>
		
<p>시 용 계 3 품</p>	<p>고 칩 품</p>	<p>개 봉 품</p>
		
<p>오 류 계 1 품</p>	<p>오 류 계 2 품</p>	
		

<p>◎관악구공고제 23 호</p> <p>공인의 계각공고</p> <p>당구 상도 제 3 등의 8 계 등의 공인</p> <p>을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6 조 제 2 항</p> <p>의 규정에 의거 계각 사용하기로</p>		<p>이를 공포한다.</p> <p>1976. 1. 21</p> <p>관악구청장</p> <p>1. 공인계각사용 및 제인일자:</p> <p>1976. 2. 1 09:30</p> <p>2. 계각사용인 및 제인의 공인명 및 인일</p>	
<p>공 인 계 각 신 구 인 영</p>			
<p>상도제 3 등장적인</p>	<p>1976년 2월 1일연경</p>	<p>상도제 3 등 계인</p>	<p>1976년 2월 1일연경</p>
 <p>(A)</p>	 <p>(B)</p>	 <p>(C)</p>	 <p>(D)</p>
<p>봉천제 1 등장적인</p>	<p>1976년 2월 1일연경</p>	<p>봉천제 1 등 계인</p>	<p>1976년 2월 1일연경</p>
 <p>(A)</p>	 <p>(B)</p>	 <p>(C)</p>	 <p>(D)</p>

봉천제 2 등 제인	1976년 2월 1일 변경	본 동장 적인	1976년 2월 1일 변경
 (가)	 (세)	 (가)	 (세)
본 동 계 인	1976년 2월 1일 변경	북석제 2 동장 적인	1976년 2월 1일 변경
 (가)	 (세)	 (가)	 (세)
사당제 1 동장 적인	1976년 2월 1일 변경	사당제 1 등 제인	1976년 2월 1일 변경
 (가)	 (세)	 (가)	 (세)

신대방동 제인 1976년2월1일언경		신림제1동 제인 1976년2월1일언경	
(가)	(세)	(기)	(세)
신림제3동장직인 1976년2월1일언경		신림제3동장제인 1976년2월1일언경	
(가)	(세)	(기)	(세)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 령</p> <p>◎ 1976. 1. 1</p> <p>도시계획과 토목기정 김 병 린 과 장 대통령비서실 파견 근무를 명함 (76.1.1~76.3.31 까지)</p>		<p>◎ 1976. 1. 10</p> <p>하 수 과 지방토목 현 정 기 사 현 선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.</p> <p>◎ 1976. 1. 15</p> <p>축산불위생검사소 지방수과사 김 용 철</p>	

지방공무원법 제 65조의 2제 1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.

◎ 1976. 1.16

연 로 과 지방전기 이 하 용
부직을 명함.

4호봉을 급함.

시민회관 근무를 명함.

◎ 1976. 1.17

의 약 과 지방보전 김 영·등
76. 1.26 ~ 3.12 까지 해외
기술훈련 규정에 의한 해외
(싱가폴의 2개국) 출장을
명함.

◎ 1976. 1.19

의 약 과 지방행정 이 가 관
지방공무원법 제 65조의 2 제 1
항 2호의 규정에 의거 그
직위를 해제함.

◎ 1976. 1.20

마포구보전소 소장직무대리 이 용 우
(지방외무기과) 지방외무기과에 임함.

4호봉을 급함.

마포구 보전소장에 보함.

위생연구소 지방보전연구사 양 기 숙
보 시 보 초임호봉을 임함.

종로보전소 지방보전기원보시 천 성 필
보 (X-선분야) 초임호봉을 임함.

중 부 병 원 지방간호기원 홍 미 예
보 시 보 초임호봉에 임함.

서대문보전소 지방간호기원 서 해 옥
보 시 보 4호봉에 임함.

영등포보전소 지방간호기원 배 은 숙
보 시 보 초임호봉에 임함.

영등포보전소 지방간호기원 김 복 자
보 시 보 초임호봉에 임함.

시립경생원 지방간호기원 강 순 자
보 시 보 초임호봉에 임함.

시립정신병원 지방간호기원 강 미 자
보 시 보 초임호봉에 임함.

시립정신병원 지방간호기원 조 순 옥
보 시 보 초임호봉에 임함.

개량 2과 지방행정주사 이 현 백
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의

결정에 따라 75.11.15자(발령 752호)의 징계처분(전책)을 동일자로 취소함.

종로구 지방행정 조수 만주사보

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의

결정에 따라 75.11.15자(발령 752호)의 징계처분(전책)을 동일자로 취소함.

◎ 1976. 1.22

보광동수원지 지방토목 권순재

복직을 명함.

5호봉을 급함.

중구 근무를 명함.

◎ 1976. 1.26

운수 3과 지방기계정보

지방공무원법 제64조의 2

제1항 1·2호의 규정에

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.

영등포수원지 지방토목 이광진

복직을 명함.

4호봉을 급함.

성북구 근무를 명함.

◎ 1976. 1.27

관광운수국장 부이사관 김상진 행정조정실 근무를 명함.

행정조정실 부이사관 이취향 서울특별시 근무를 명함.

출석 동지

(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)

지방건축기사 박길영

지방건축기사 김길홍

귀하에 대한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개최기일을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출석일시: 75. 2. 5

나. 출석장소: 내무국 인사과

(기획상황실)

76년 1월 24일

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위원장

김길영 귀하

김길홍 귀하